III. [실습기관용] 현장실습학기제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1. 학교 주도형 운영

2. 실습기관 주도형 운영

Ⅲ. [실습기관용] 현장실습 학기제



기업 및 기관에서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데 학점인정 처리를 위해 학생 및 학교에서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하면?

- ■많은 기업 및 기관 등에서는 학교와 무관한 **해당 기관 자체적 인력 활용제도**로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존 '현장실습'이라는 제도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로 <u>해당 기관 자체 운영사항에 대해</u> **학생이나 학교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을 위한 관련 서류 제공 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서류 구비에 협조해 주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혹은 반대로 일부 기업 등에서는 자체 근로, 산학연계 인턴 등의 명칭으로 학생을 직접 모집하면 서, 선발 요건 등으로 관련 활동에 대해 현장실습 등으로의 **학점인정 여부를 학생이나, 학교에 전** 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①기업/기관 자체 운영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 <u>학생 및 학교에서</u> 현장실습학기제 명목으로 학점인정을 위해 관련 서류 작성 요청하는 경우
- ②기업/기관에서 산학연계 인턴 등의 명칭으로 자체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학생의 자격 또는 선발 조건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등으로의 학점인정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여, 학생 및 학교에 관련 학점 부여 사항을 전가하는 경우 등은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위반으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 <u>「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0호 위반에 해당될</u>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 록 하는 행위











④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기업 또는 기관 자체적 인력 활용제도가 **학교와의 산학협력 관계**로 학생들에게 학점인정 되 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경우(특히, 졸업예정 학생 대상)에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인력 활용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 또는 기관 자체 제도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 시)에 따라 실습기관 주도형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본 장의 제2절 실습기관 주도형 운영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업 또는 기관 자체적 인력 활용제도가 **학점과 연계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 형** 태와 무관함을 명확하게 공고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교에서 학점인정을 위한 관련 서류 제공 요청이 있을 시 거부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超水分分かり知りよの上日 好对处对知识十七世 「正言正堂性」 针比的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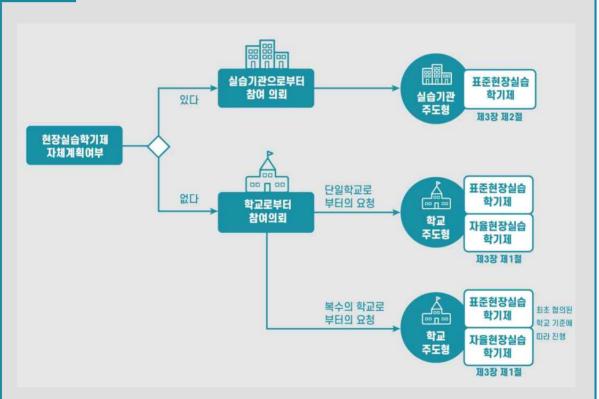
학교 주도형 운영

1 학교 주도형 vs 실습기관 주도형 운영형태 구분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2)



- 기업 또는 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u>운영 계획 등이 없는 상황</u>이었으나, 학교로 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 및 협조를 받은 경우라면 학교 주도형 현장실습학 기제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현재 참고하고 있는 본 절(제1절 학교 주도형 운영)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제도와 관련하여 <u>내부적 계획(대상부</u> <u>서, 규모, 운영일정 및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u>라면 실습기관 주도형 현장실습학기 제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제2절 실습기관 주도형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운영 절차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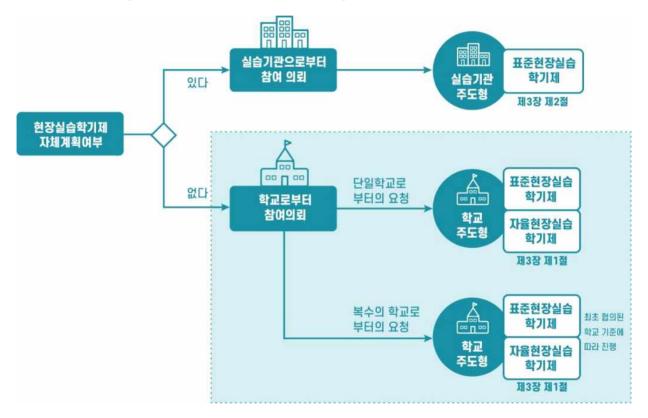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u>^</u>)

(2)

-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를 받은 경우 확인할 사항
- 학교로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를 받은 경우에 따른 조치 구분



- 학교 주도형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한 학교 외 다른 학교(또는 복수의 학교)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기로 한 사항이 없을 경우 참여 의뢰한 학교와 표준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운영형태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 기준 및 실습지원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의뢰한 학교로부터 충분한 기준 안내와 설명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주도형 형태로 이미 다른 학교(또는 복수의 학교)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기로 협의(확정)된
 상태라면, 복수의 학교와 협의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표준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 다만, 학교별 상황과 조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실습 직무나 여건일 경우** 참여하는 학교별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여건 등에 있어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습기관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규정 매뉴얼



- 만약, 복수의 학교와 학교 주도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된 경우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하여 한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면 됩니다.

- 이 경우 필요 시 해당 실습기관에서 계획 및 일정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습기관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복수의 학교와 **학교 주도형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된 경우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 장합니다.
- 복수의 학교와 '학교 주도형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된 경우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하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습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의 운영을 의뢰하거나 계획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가 있 을 경우 학교별 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 를 말한다.
-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 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 건 · 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 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참여 의뢰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

- 학교 주도형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로부터 참여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는 현장실 습학기제 혐의 진행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① 학교에서 해당 기관으로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 시, 해당 학교 전담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의 전 담인력과 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참여 의뢰는 학교 전담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교원 또는 직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의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의 확인과 이해를 위해 세부적인 협의는 전담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② 해당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요청 관련사항을 공문 등의 공적문서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실습기관 간의 관계로 운영되는 제도로, 해당 교육과정 또는 제도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 단순 참여의뢰가 아닌 충분한 안내 자료 등이 포함되어 해당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지, 운영규정 등에 부합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참여 의뢰한 학교 내에 해당 실습기관의 업무분야에 부합하는 학과/전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④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선발 학생에 대해 수강신청 등의 등록절차, 상해보험 가입을 실시하는지 확인 합니다.
- ⑤ 학교에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요건임을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학교에서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고 할 경우 법 위반으로 해당 학교와 현장실 습학기제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⑥ 복수의 학교에서 의뢰할 경우 향후 복수의 학교별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학생 간 차등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제시 기준 및 여건 등의 차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기타 실습기관 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에 대해 학교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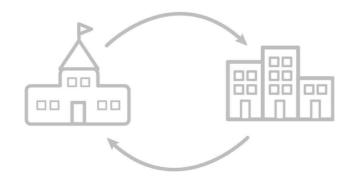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지원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환경·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 ④ 지원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 선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선택
- 학교로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를 받은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운영 과정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할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할지를 결정합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주요 차이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세부 사항은 제2장에 있는 제2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3절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
| 운영형태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 기준 -실습기관이 주 5일제인 경우 동일하게 주 5일 기준으로 운영 -실습기관이 주 4일 또는 6일제인 경우 4일 또는 6일 등으로 실습기관의 근무 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 -실습기관이 일 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실습기관이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 태와 동일하게 운영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사업장의 경 우 동일하게 운영 | ■협의하여 설정 운영 -실습기관의 근무제 또는 전일제와 동일하 게 운영하거나, 다른 형태로도 운영 가능 -실습기관의 근무제/전일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 기제로만 운영 가능 ※일반적인 주5일, 주40시간 시업장의 경우 동일하게 운영하거나, 간헐적, 비연속적, 단시간 등으로도 운영 가능 |
|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 여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상으로 운영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 이 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시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음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세부기준 확인 필요)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교육시간 비율(25%초과)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세부기준 확인 필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한정하여 세부기준 준수 시 무급으로 운영 할 수 있음(세부기 준 확인 필요) |
| 서식 | ■표준 서식 적용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의 경 우 표준 서식으로 운영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학교별 양식 차이로 인한 실습기관의 행정불편 완화 및 효율화 목적 | ■학교별 서식 적용 -운영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 등 필요 한 모든 서식은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 |
| 비고 | 열정페이, 노동문제 등의 해소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운영기준 | 학교별 자율성, 다양성 요구에 따라 해당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기준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QD**

(%)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른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 간 수)
-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1. 실습기관 정보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각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다.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

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 확정 이후의 절차

- 학교 주도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운영 과정이 확정되면, 이후 [2단계]에서 [13단계]에 이르는 절차는 '제2장 제1절 ③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부분의 [2단계] ~ [13단계] 기준 및 내 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다만, 공통적인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절차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준은 '제2장 제2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른 운영 기간 및 시간, 실습지원비 등의 기준'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준은 '제2장 제3절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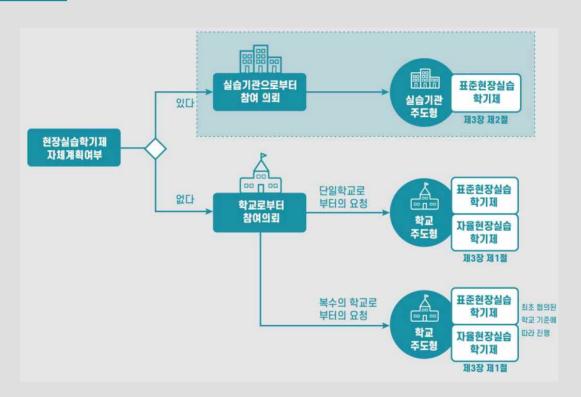
2

실습기관 주도형 운영

1 실습기관 주도형 vs 학교 주도형 운영형태 구분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제도와 관련하여 내부적 계획(대상부서, 규모, 운영일정 및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라면 실습기관 주도형 현장실습학기제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현재 참고하고 있는 본 절(제2절 실습기관 주도형 운영)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기업 또는 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등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학교로부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 및 협조를 받은 경우라면 학교 주도형 현장실습학기제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제1절 학교 주도형의 내용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현장실습제도에서 이미 실습기관 주도 형태로 운영했으면?

- ■일부 실습기관의 경우 이미 기존 현장실습 제도에서부터 사실상 실습기관 주도 형태로 현장실습학 기제를 운영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 ■기존 실습기관 주도 형태와 새롭게 규정된 실습기관 주도 형태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 니다.

[기존 현장실습 제도에서의 실습기관 주도 형태]

- ① 운영 계획 등이 학교 또는 실습기관별 자체 양식으로 구비되어 있음
- ②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이 학교 또는 실습기관별 자체 기준으로 정해져 있음
- ③ 운영 계획 등의 모집 공고가 학교를 통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체 공고 형태가 많음
- ④ 학생 신청 등을 학교를 통하지 않고 실습기관 자체에서 직접 접수 받고 있음
- ※③과 ④의 경우 기존 현장실습이라기 보다 기관 자체 인턴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음
- ■기존 현장실습 제도에서의 실습기관 주도 형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한 필수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운영 계획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 ②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에 부합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 ③ 별도의 자체 모집 공고가 아닌 대상 학교를 통해 공고를 진행 하면 됩니다.
- ④ 학교를 통해 학생의 신청. 접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실습기관에서 직접 학생을 모집·선발 하는 것이 아닌 학교를 통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사를 가진 학생이 신청하여 선발되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만약, 실습기관에서 편의를 위해 별도의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한 학생 신청 접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접수한 후 학교에서 신청 학생 중 적격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의 별도 자체 시스템을 통한 접수 방법을 안내하여 2차적으로 실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도 운영 가능합니다.
- 중요한 사실은 실습기관에서 학교를 배제한 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기관과 학교 간 상호 협의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단, 학교를 통하지않고 직접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 기관 주도적으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없나요?

-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 및 기관 등에서는 자체 기준 등으로 근로, 인턴, 현장실습, 현장체험, 현장 학습, 00학생연구원, 00아카데미, 00교육과정, 00학점과정 등의 명칭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경험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일경험 형태에 대해 여러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또는 '실습학기제'라는 형태 로 포장하거나, 학점과 연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무분별할 운영으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고등교육법」및「산학협력법」、「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실습기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 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물론 기관의 책임 하에 해당 기관 주도적으로 다양한 일경험 형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현장실습학기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현장실습학기제' 학점과 연계하지 않 거나, 학점과 무관한 형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학생이나 학교에 관련한 학점 연 계 또는 인정 과정으로 요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따라서 기관이 주도하면서 학교와 연계하여 기존 '현장실습'형태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 습기관 주도형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 를 말한다.
-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 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 건 · 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 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제 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운영규정 매뉴얼



운영 절차 및 기준 2





(실습기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 및 수요조사 시 확인할 사항
- 실습기관의 사전 계획 여부
- 실습기관 주도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본 매뉴얼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운영 취지 및 기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후 내부적으로 운영규모, 대상 학교, 운영일정 등을 확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 최근 실질적인 실습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실질적인 실습기관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실습기관에서는 대상 학교 등에서 보내는 참여 협조의뢰 공문 등을 접수 받지 않고, 실습기관에서 먼저 운영계획을 포함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공문 또는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발송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실습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① 실습기관-학생 간에 상호 유익적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및 운영 계획의 설계, 수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② 직무별 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필요 시 복수의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한 실습지원비 기준 준수 및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④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 공간, 장비, 재료 등의 확보,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⑤ 실습기관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11조(운영 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제 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 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 13.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 학교에 대한 참여 의뢰 및 수요조사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실습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이므로 실습기관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참여 수 요조사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대상 학교 선정 시 고려할 무엇인가요?

- ① 해당 학교에 실습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에 부합하는 학과/전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② 해당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해당 학교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 및 제도, 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서식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 표준 서식 외 학교에서 추가적인 별도 서식을 요구하는지, 표준 서식으로 운영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⑤ 실습기관-학교 상호 간에 제시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부합하는 지 확인합니다.
- ⑥ 학교에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선발 학생에 대해 수강신청 등의 등록절차, 상해보험 가입을 실 시하는 지 확인합니다.
- ① 실습기관에서 제시하는 실습기간 및 운영일정 등을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대부분 학교의 실습기간과 달리 특정 학교에서만 기간을 단축,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 당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사전에 일반적인 학교의 학기별 기간 등에 대한 사전 확인 후 실습기 간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⑧ 기타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지 확인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OD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1. 실습기관 정보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 대상 학교 선정 이후의 절차

- 실습기관 주도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상 학교가 확정되면, 이후 [2단계]에서 [13단계]에 이르는 절차는 '제2장 제1절 ③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부분의 [2단계] ~ [13단계] 기준 및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다만, 공통적인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절차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준은 제2장 제2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른 운영 기간 및 시간, 실습지원비 등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2)

사례 알펴보기

CASE STUDY

참여 기관에게는 어떤 유익과 효용이 있는가?

(OD)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을 매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OO기업의 인사담 당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우수인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류상 스펙이나 면접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같이 실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우수 학생들에게 먼저 취업오퍼를 제시함으로써 우수인 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의 대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가장 큰 효용으로 인력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속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미 몇 개월간의 실습 및 교육을 통해 기업과 본인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이후 취업으로 이어진 학생들은 일반 신입사원보다 근속률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이며 앞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TO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매 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들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 OO씨는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이 일반직원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에 창의성을 발현하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루틴한업무에 본인들의 스킬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효율화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등함께 근무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마케팅팀장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한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기업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정교한 전략 수립과정에서 직원들의 리터치 등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학생들이기에 낼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은 확실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